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16호)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3호)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23호)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31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71호)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6호)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3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3
1. 산업기술 정의규정 정비 (김성원의원안)	13
2.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김성원의원안)	16
3.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김성원·박성훈의원안)	19
4.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사 절차 정비(김성원의원안)	29
5.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 등(김성원의원안)	39
6.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확대(김성원·박성훈의원안)	43
7.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권향엽·한민수의원안)	50
8.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 및 보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김성원의원안)	53
9.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한민수의원안)	58
10. 산업기술 침해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김성원의원안)	60
1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박성훈의원안)	62
12.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등 국회에 대한 보고(권향엽·한민수의원안)	65
13. 손해배상책임 강화(김성원·고동진·박성훈·김동아의원안)	67
14. 비밀유지의무자 확대 (김성원·박성훈의원안)	71
15.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칙 강화(김성원·고동진·정연욱·권향엽·한민수의원안)	74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2516호]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4. 8. 2.
3. 회 부 일 : 2024. 8. 5.

[의안번호 제2202543호]

1.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5.
3. 회 부 일 : 2024. 8. 6.

[의안번호 제2202723호]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의안번호 제2203031호]

1. 제 안 자 : 정연욱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8. 21.
3. 회 부 일 : 2024. 8. 22.

[의안번호 제2203171호]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의안번호 제2203916호]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의안번호 제2204033호]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2516호]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

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의안번호 제2202543호]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

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2항).

[의안번호 제2202723호]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 제1항).

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의안번호 제2203031호]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며,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의안번호 제2203171호]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

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확한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

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미승인 또는 미신고한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해외인수·합병 등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신설).

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확대함(안 제14조)

마.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안번호 제2203916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

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판

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 ·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 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 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호의2 및 4호의2 신설).

라.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의안번호 제2204033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실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침해행위를 한 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 충분한 처벌 수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산업기술의 정의규정 정비 (김성원의원안)

개정안은 산업기술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물기술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구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 ----- ----- ----- ----- ----- ----- -----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전력기술관리법</u>」 제6조의2 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u>전력기술</u> 마. ~ 아. (생략) <신설> 자. (생략) 2. ~ 4. (생략)	<삭제> 마. ~ 아. (현행과 같음) 자. 「<u>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u>」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 <u>산신기술</u> 차. (현행 자목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등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음.¹⁾

이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²⁾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새로운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삭제 <2016.1.6.>

전력기술은 2016년 1월 6일 동 법 개정으로 더이상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기술³⁾을 산업기술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해양수산신기술은 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보유기업이 영업비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경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한다면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더라도 기술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해양수산신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2.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김성원의원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의 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안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안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 심사(제11조 및 제11조의2)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성원의원안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u>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중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등을 심의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⁴⁾

4)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⁵⁾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평가 요구 증대와 의약품 인허가 및 소송 등의 증가로 인해⁶⁾ 현행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체제로는 심도 있는 기술을 신속히 평가하고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등의 기술보호조치(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을 기술안보센터로 지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각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⑦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6) ('20년) 52회, 185건 →('23년) 78회, 267건 →('24.10월) 90회, 331건

정하여 국내외 기술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일부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KEIT의 R&D PD(Program Director)들을 참여시켜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안 및 수출·해외인수합병 등을 검토하여 전문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3.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김성원·박성훈 의원안)

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고 함)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기업등에게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략) <u>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u>⑦ (생략)</u> <u><신설></u>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u>⑥ (현행 제7항과 같음)</u> <u>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u>	 <u>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u>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u>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u>	<u>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u>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u>판정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u><단서 신설></u>	제39조(과태료) ① ----- ----- ----- -----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 ----- ----- -.
<u><신 설></u>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u><신 설></u>	2(생략)	2. (생략)
1. (생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1호와 같음)
<u><신 설></u>	4. ~5.(생략)	
2.·3. (생략)	6.·7.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 대상 기관⁷⁾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그러나 대상기관이 동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판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⁹⁾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기술보호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보호에 취약한 상황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전략기술 판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¹⁰⁾,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8)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9) 2019년 동 국가핵심기술 판정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핵심기술인 조선분야 기술도면이 프랑스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음.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첨단전략기술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등에게 판정신청을 통지할 수 있다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불법 수출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기술을 숨기는 기업등에 대해 판정신청 통지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의 등록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등이 관련 기술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의3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기업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2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신 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u>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u>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u> 2. 「<u>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u>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u> 3. <u>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u> ② <u>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u>	<u>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u>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u> 2. 「<u>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u>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u> 3. <u>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u> ② <u>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u>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u>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	<u>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u>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9조의2 (생 략)</u>	<u>제9조의4 (현행 제9조의2와 같음)</u>	<u>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현행 제9조의2와 같음)</u>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39조(과태료) ① ----- ----- -----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 ----- -----.
<신 설>	1. (생 략)	1. (생 략)
<신 설>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②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5. (생 략) 6. · 7.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수출심사 이력이 있는 대상기관을 목록화하고 있을 뿐 각 기업별 보유기술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기업등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기술보유기관이 대상기관에 부여되는 기술보호조치나 실태조사 등의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보유사실을 숨기는 경우,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술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한다면 기술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회피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기술유출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등은 등록 내용 및 방법 등을 대상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사 절차 정비(김성원의원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7항), 미승인 또는 미신고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을 중지·금지·원상회복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의2제10항).

또한,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1조의3 신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승인심사를 위해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u>해당국가핵심기술을</u> 외국기업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 ----- -- <u>해당 국가핵심기술</u> -----

현행	김성원의원안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② ~ ④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⑦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u>	----- ----- ----- <u>미리</u>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

현행	김성원의원안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생략)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 3.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 ⑨ (생략) ⑩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 ⑥ (생략) <신설>	의 수출을 한 경우 ⑨----- ----- -----. 1. (현행과 같음) 2. 제6항----- ----- ----- --- 3. 제8항제2호----- 부정승인 --- ----- -----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제8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합병

현행	김성원의원안
⑦·⑧ (생략)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1의2. (생략) 2. 제7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심	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⑪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8항----- ----- -----

현행	김성원의원안
의 3. 제7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4.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심의 ⑪·⑫ (생략) <신설>	- 3. 제8항----- ----- 4.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 ----- ----- ⑫·⑬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9조(과태료) ① -----

현행	김성원의원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신설> 1. (생략) <신설> <신설> 2. 3. (생략) ② (생략)	----- -----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2. (생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생략) 6. 7.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가.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에 대한 장관의 수리처분 명확화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승인을 요하는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¹¹⁾

그러나 신고를 요하는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해서는 장관의

11)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수리처분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¹²⁾, 현재는 산업기술보호지침(고시)에 따라 신고수리를 하고 있음.¹³⁾

이에, 개정안은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수반됨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장관의 신고수리가 있어야 함을 법률로써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란 소지를 없애고 미신고로 인한 기술유출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즉시 수출중지 등의 조치명령

현행은 미승인·미신고 상태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12) 행정법상 신고는 신고만으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구분됨. 신고 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신고만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음.

13)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1호)

제23조(수출신고 검토 및 심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32조(해외인수·합병등의 검토 및 심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위원회 보고·심의 등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수출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정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미승인·미신고 수출등이 명백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기술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신속히 방지 혹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11조제9항)¹⁴⁾ 또는 해외인수·합병

14)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등(제11조의2제11항)¹⁵⁾의 승인·신고를 심사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제11조의2제7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당한 승인·신고수리 없이 해외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제11조의2제9항)에는, 장관은 이를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미이행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¹⁶⁾

그러나 벌금 등 사후에 이뤄지는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기술유출의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15)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⑩ (생략)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6조(벌칙)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과 같이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행 중인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시정조치, 조치명령 등을 부과받은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일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다수의 입법례가 존재함.¹⁷⁾

유사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 ②·③ (생략)

17) 「건축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5.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 등(김성원의원안)

개정안은 제10조의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또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제13조(개선권고) ①·② (생략)	제13조(개선권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 조치명령을 ----- 조치명령의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신설> 1. (생략) <신설> <신설> 2. 3. (생략) ② (생략)	<u>정한다.</u> 제39조(과태료) ① ----- ----- ----- <u>.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u> 1. 2. (생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생략)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7.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제1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제12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있음.¹⁸⁾

그러나 이러한 개선권고는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후속조치를 할 수 없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제10조)에 대한 개선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18) 제13조(개선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보호조치 거부·방해행위로 보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¹⁹⁾, 현재까지 개선권고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⁰⁾

이에, 개정안은 개선권고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불이행하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선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조치가 미흡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제12조)와 관련한 개선권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국가핵심기술 등의 보호 강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9)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이하 생략)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제12조)에 대한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나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²¹⁾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함.

2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확대(김성원·박성훈의원안)

두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김성원의원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음.

개정안은 대상기관 등의 계약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권한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 목적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안 제14조제4호),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안 제14조제6호), 국가핵심기술을 미신고·부정신고하고 수출하는 행위등을 금지행위로 추가하고(안 제14조제8호),

비밀유지의무자의 산업기술 유출행위(안 제14조제2호), 국가핵심기술을 정당한 신고 혹은 승인 없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는 행위(안 제14조제6호 및 제6호의2), 비밀유지의무자의 산업기술 사용권한 소멸 등에 따라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기피,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안 제14조제6호의3)가 고의성 또는 목적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u> <u><신설></u> 3. 제1호 또는 제2호의 <u>규정에</u>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대상기관</u> <u>의 산업기술을</u> ----- ----- ----- ----- ----- 4. <u>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u>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u> <u>에</u> ----- -----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u>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u> 3. <u>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u>----- ----- -----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 거나 공개하는 행위	----- ----- ----- -----	----- ----- ----- ----- ----- <u>4의2.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 개·알선 또는 유인 하는 행위</u>
5. (생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6. <u>국가핵심기술을 외국 에서 사용하거나 외국 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u>	9. <u>제11조의2제1항</u> ---- ----- ----- ----- -----	
6의2. <u>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 을 알면서도 제11조의 2제5항 및 제6항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이나 그</u>	10. <u>제11조의2제5항</u> --- ----- ----- ----- ----- ----- -----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 수·합병등을 하는 행 위 6의3. 제34조 또는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 이 소멸됨에 따라 대 상기관으로부터 산업 기술에 관한 문서, 도 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 이나 산업기술의 삭제 를 요구받고도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 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u>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 제9항에 따른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생략)	3. ----- ----- ----- ----- ----- ----- ----- ----- ----- ----- --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 ----- ----- ----- -----이를----- ----- ----- ----- 11. 제11조제6항·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 제10항----- ----- ----- ----- 12. (현행 제8호와 같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침해행위등”)를 11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이 중 일부 침해행위등은 고의성 또는 목적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범죄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여야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침해행위 범위 확대

현 행	김성원의원안
[1호] 기술 부정취득, 사용, 공개	[1호] 좌 등
[2호]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술 보유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u> 기술 유출, 사용, 공개, 제3자 전달	[2호] 고의요건 삭제
[6-3호]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술 보유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u> 자료보유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관으로부터의 기술정보의 삭제, 반환요구 등을 거부	[3호] 목적요건 삭제
<신 설>	[4호] 산업기술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목적외 사용·공개
[3호] 1호~2호 사실을 알면서도 기술취득, 사용, 공개	[5호] 1호~4호 확대
<신 설>	[6호] 1~4호까지의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5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을 받아 수출	[7호] 좌 등
<신 설>	[8호] 미신고 또는 부정신고 후 수출
[6호] <u>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u> 미승인, 부정승인을 받아 M&A	[9호] 고의요건 삭제
[6-2호] <u>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u> 미신고, 부정신고 후 M&A	[10호] 고의요건 삭제
[7호] 중지·금지·원상회복명령 불이행	[11호] 좌 등
[8호]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받은 자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및 공개	[12호] 좌 등
[4호] 1호, 2호 (중대과실)사실을 모르고 기술취득, 사용, 공개	[13호] 1호~4호 확대

이에, 개정안은 기술유출 범죄 요건에서 고의성 또는 목적성을 제외함으로써 행위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도록 하고(안 제14조제2·3·4·10호),

제3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안 제14조제5호 및 제13호)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산업기술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외 사용·공개하는 행위(안 제4조제4호),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안 제6호), 국가핵심기술을 미신고·부정신고 후 수출하는 행위(안 제8호)를 침해행위로 신설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산업기술 유출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 제14조제5호(안 제7호)가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호(미승인, 부정승인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와 동일하게 거짓으로 승인을 얻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7.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권향엽·한민수의 원안)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 압류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의2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권향엽·한민수의원안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²⁾²³⁾

22)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

그러나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사후적으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관련 설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기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해당 물품의 시장 내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침해물품 압류조치는 예상되는 침해행위를 잠정적으로나마 중단시킬 수 있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압류품을 통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외의 유사 입법례로 미국은 「영업비밀보호법(DTSA)」에서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방적 민사상 압류조항을 두고 있고,²⁴⁾ 유럽연합(EU)은 「영업비밀보호지침(2016)」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유통되지 못하도록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⁵⁾

다만, 법무부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로서, 개정안과 같이 금지청구와 관련된 보전처분²⁶⁾으로서 ‘압류’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

할 수 있다.

23)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침해행위의 물건폐기 혹은 설비제거 사례는 없었음.

24)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김윤정, 법학논고, 2020; 70:305-335

25)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3.6.

26) 보전처분이란 소송이 확정판결 전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명하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미국 입법례와 유사하게 압류조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민사적 구제임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함²⁷⁾).

는 처분을 의미함. 법무부는 개정안의 압류규정은 보전처분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봄.
27)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나, 개정안은 침해행위 금지청구와 관련한 보전처분이므로 양자의 개념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미국은 민사상 압류(CIVIL SEIZURE)의 요건, 절차, 보상 규정 등을 법률에 상세히 정하고 있음.

【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ec. 2. FEDERAL JURISDICTION FOR THEFT OF TRADE SECRETS

(a) (생략)

(b) Private Civil Actions -

(1) (생략)

(2) CIVIL SEIZURE(민사상 압류)

(A) In General. -

(i) Application. - (이하 생략)

(ii) Requirements for issuing order - The court may not grant an application under clause (i) unless the court finds that it clearly appears from specific facts that -

(I) ~ (VIII) (민사상 압류의 요건 규정)

(B) ~ (F) (민사상 압류의 절차 등 규정)

(3) REMEDIES (민사상 압류에 대한 보상 규정)

8.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 및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김성원의원안)

개정안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지정·고시·공고·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안 제14조의3제2항),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제1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생략) <u><신설></u>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u>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고시·공고·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u>
② (생략)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u>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운</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의 설치·운</u>

현행	김성원의원안
<u>영하는 기술지원</u> 3.·4. (생략) ② (생략)	<u>영 지원</u>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²⁸⁾ 장관이 ‘산업기술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음.²⁹⁾

현재 대상기관 등이 기술유출 등 침해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서는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산업기술로 인정하고 있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들은 각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기술확인서와 별도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 기술을 지정·고시·공고·인증한 행정기관의 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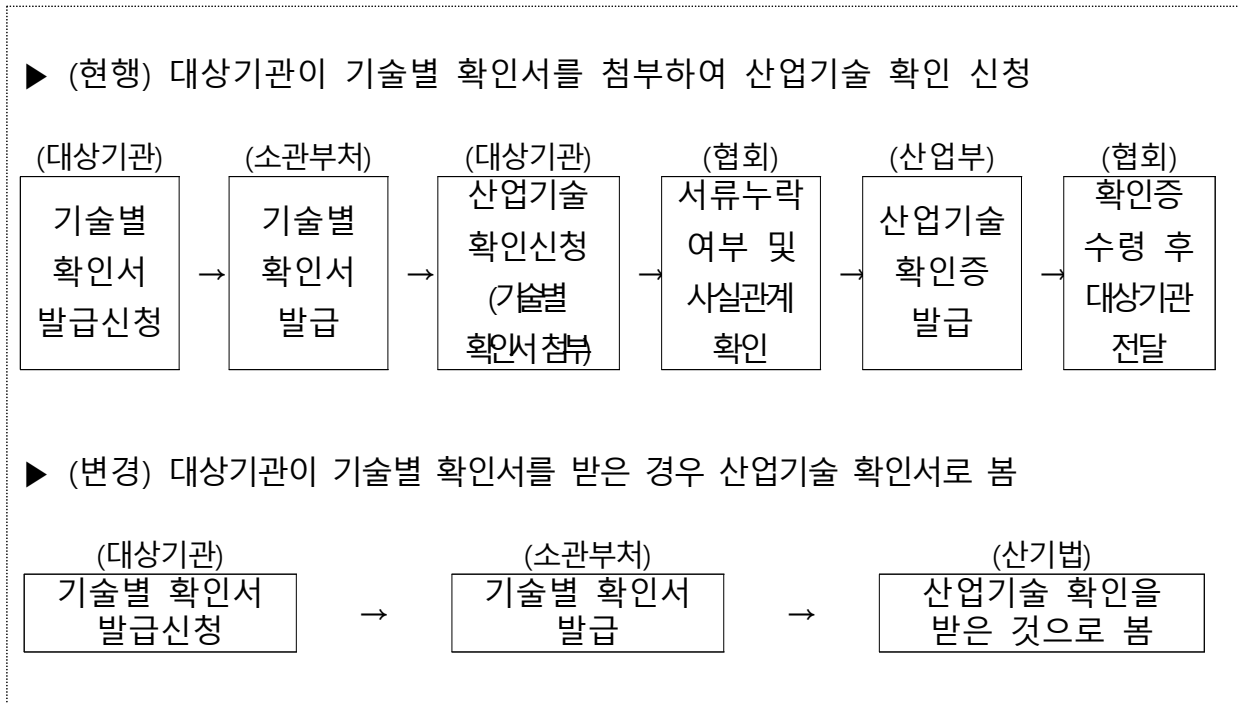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3은 산업기술의 확인을 위해 산업기술로 지정된 개별기술을 지정·고시·공고·인증한 행정기관에서 발

28)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급한 기술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³⁰⁾ 개정안은 각 기술의 행정기관에서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개정안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비교



개정안에 따라 소관 부처의 기술별 확인서를 산업기술확인서로 간주한다면 유사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 설명서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한편,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보안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술지원,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DB를 관리하고,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술보호 전문컨설팅 및 기술보호 교육,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를 위한 석사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법 규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상기관 등이 산업기술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술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3년도 예산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 6곳의 보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예산으로는 보안인프라 구축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개정안과 같이 산업기술 보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대상기관의 규제강화에 따른 부담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한민수의원안)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금지행위로 적용하고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한민수 의원안
<신 설>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하고(제14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제36조)을 두고 있음.

대한민국 형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를 병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외에서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산업기술 침해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김성원의원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 침해신고 건을 조사 및 조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상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 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 ----- ----- ----- ----- -----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의 신고를 ----- ----- -----.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은 산업기술 침해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권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수사권이 있는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침해신고에 대해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수사기관과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하고 산업기술 보호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상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특히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경우 외교문제 등 국가 안보 위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박성훈의원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성훈의원안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② (생략) <u><신설></u>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밖에----- -----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¹⁾.

31)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대상기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관리 현황,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또는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에 관하여 실태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²⁾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서면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시 기술유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음.

다만, 외국자본이 국내에 국가핵심기술과 무관한 업종 또는 분야의 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후 본국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술유출 방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으나, 현행은 ‘대상기관’³³⁾이 아닌 기업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기술유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3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등 침해신고가 있을 시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을 신속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면,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여러 기술유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위협 및 국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12.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등 국회에 대한 보고(권향엽·한민수의원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권향엽 의원안	한민수의원안
<신 설>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제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건 적발 건수를 제공받아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등은 알 수 없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기술유출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무부의 협조로 산업기술 해외유출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제공받아 국회에 보고한다면 국회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논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 현황은 대부분 정보수사기관이 조사·수사 중인 사항이며,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확정되므로 산업부장관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유출·절취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매년 2회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도록³⁴⁾ 규정하고 있음.

34)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제4조(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에 관한 보고)(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EC. 4. REPORT ON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ABROAD)는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매년 2차례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지적재산담당 상무부차관, 미국특허청장 및 기타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절취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고, 법무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1건의 보고서만 확인됨

13.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김성원·고동진·박성훈·김동아의원안)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만, 김동아의원안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로 하되, 일정 사항 등³⁵⁾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고동진·박성훈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u>3배</u>	② ----- ----- ----- ----- ----- ----- <u>5배</u>	② ----- ----- ----- --- <u>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u> 를 배상액으로 정한다. 다만, 다

35)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현행	김성원·고동진·박성훈의원안	김동아의원안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	<u>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손해로 인정되 는 금액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u>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해 기술 보유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⁶⁾.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보유기관 및 국가경제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단순한 손해전보를 넘어서는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8월 법률 개정 시 도입되었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18년~2023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104건에 이르고,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기

36)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심각한 수준임.³⁷⁾

이렇듯, 현행 제도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로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의 경우 손해배상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바 있으며('24.8.21.시행), 「특허법」도 고의적인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5배로 규정하는 등 기술보호관련 법령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임.³⁸⁾

이에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할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37) 2018~2023.7월까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104건으로 이중 국가핵심기술은 36건임. 반도체(30건), 디스플레이(23건), 전기전자(11건), 자동차(9건), 기계(8건), 정보통신(7건), 조선(6건), 기타 (8건)임.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로 하되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살펴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 김동아의원안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나,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5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관의 재량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형식(체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³⁹⁾

법무부는 개정안에 의하면 기본 법체계의 원칙과 예외를 바꾸는 체계정합성의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다른 피해 유형과의 형평 문제⁴⁰⁾, 피고가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문제⁴¹⁾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9) 미 연방대법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허용될 수 없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수학적공식과 같은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이 고도의 자유재량행위(highly discretionary)임을 인정하고 있음.

출처: 징벌적 손해배상 연구(2012.12., 세계법제정보센터, 12면)

40)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다른 피해 유형과의 형평의 관점에서 개정안 사례를 달리 취급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41)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결과, 사건의 유형이나 위법의 정도와 관계 없이 배상액이 손해액의 5배로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피고가 감액 사유를 증명해야 함.

14. 비밀유지의무자 확대 (김성원·박성훈의원안)

두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자로 국가핵심기술을 판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제2의2호 및 제2의3호).

또한, 김성원의원안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관련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한 비밀유지의무를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의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9조의2에 따라</u> <u>국가핵심기술 판정 등</u> <u>의 업무를 수행하는</u> <u>자</u> <u>2의3. 제9조의3에 따라</u> <u>국가핵심기술 보유기</u> <u>관 등록 등의 업무를</u>	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9조의2에 따라</u> <u>국가핵심기술 판정</u> <u>등의 업무를 수행하</u> <u>는 자</u> <u>2의3. 제9조의3에 따라</u> <u>국가핵심기술 보유</u> <u>기관 등록 등의 업</u>

현행	김성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3. 3의2. (생략) <u><신설></u>	<u>수행하는 자</u> 3.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13조에 따라 개</u> <u>선권고 등의 업무를</u> <u>수행하는 자</u>	<u>무를 수행하는 자</u> 3. ~ 5. (현행과 같음)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17조----- ----- ----- ----- -----	6. 제17조에 따른----- ----- ----- -----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대상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⁴²⁾.

42)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직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두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판정(안 제9조의2) 및 국가핵심기술의 보유기관 등록(안 제9조의3), 개선권고(안 제13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거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개선권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중요한 산업기술 정보에 접근 가능하므로 이들을 비밀유지의무자에 추가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15.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칙 강화(김성원·고동진·정연욱·권향엽·한민수의원안)

각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요건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목적)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고의)로 변경하고 해외유출범죄의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특정 해외유출범죄(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김성원의원안은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5년/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때 벌금형은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15억,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상한액 내에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성원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정연욱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u>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u>	제36조(벌칙) ① ----- ----- -----	제36조(벌칙) ① ----- ----- -----	제36조(벌칙) ① ----- ----- <u>사용될</u>	제36조(벌칙) ① ----- ----- <u>사용될</u>

현 행	김성원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정연옥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나 사용되	을 알면서	-----	-----	것 임 을	것 임 을
게 할 목적	제14조 제1	-----	-----	알 면 서	알 면 서
으로 제14	호부터 제1	-----	-----	도-----	도-----
조 제1호부	2호-----	-----	-----	-----	-----
터 제3호가	-----	-----	-----	-----	-----
지의 어느	-----	-----	-----	-----	-----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행	-----	-----	-----	-----	-----
위를 한 자	-----	-----	-----	-----	-----
는 3년 이	-----	--7년-	--5년-	-----	--5년-
상의 유기	-----	-----	-----	-----	-----
징역에 처	-. -----	-. -----	-----	-----	-. -----
한다. 이 경	65억원 --	65억 원	20억 원	65억원-	20억 원
우 15억원	-----	-----	-----	-----	-----
이하의 벌	-----	-----	- 벌 금	-----	벌금(위
금을 병과	-. -----	-----	(위반행	-----	반 행 위
한다.	-----	----.	위로 인	--.	로 인한
			한 재산		재 산 상
			상 이득		이 득 액
			액의 10		의 10배
			배에 해		에 해당
			당 하는		하는 금
			금 액 이		액이 20
			20억 원		억 원 을
			을 초과		초 과 하
			하면 그		면 그
			재 산 상		재 산 상
			이 득 액		이 득 액
			의 2배		의 2배
			이상 10		이상 10
			배 이하		배 이하
			의 벌		의 벌
			금)----		금).---

현 행	김성원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정연욱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산업 기술 이 외국 에 서 사용 될 것 을 알 면 서 제 14 조 제 1 호 부 터 제 6 호 까 지 및 제 12 호 - -- 30 억 원 -----.	② ---- - 5 년 이 상 의 유 기 징 역 -- 20 억 원 -----. 	-----. ② ----- 20 억 원 - 벌 금 (위 반 행 위 로 인 한 재 산 상 이 득 액 의 10 배 에 해 당 하 는 금 액 이 20 억 원	② ---- 사 용 될 것 임 을 알 면 서 도 ----- 30 억 원 ----- - .	-----. ② ---- 사 용 될 것 임 을 알 면 서 도 ----- -- 20 년 ----- - 20 억 원 ----- 벌 금 (위 반 행 위 로 인 한 재 산 상 이 득 액 의 10 배 에 해 당 하 는 금 액 이 20 억

현 행	김성원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정연욱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을 초과 하면 그 재산 상 이득액 의 2배 이상 10 배 이하 의 벌 금)----- -----.		원을 초 과 하 면 그 재산 상 이득 액의 2 배 이상 10배 이 하의 벌 금)----- -----.
③ 제 14 조 각 호(제4 호·제6호 ·제6호의 2 및 제8호 는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 위를 한 자 는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③ 제14조 제 1호부터 제 11호까지-- ----- ----- ----- ----- ----- ----- ----- -----.	③ ~ ⑧ (현 행과 같 음)	③ ~ ⑧ (현 행과 같 음)	③ ~ ⑧ (현 행과 같 음)	③ ~ ⑧ (현 행과 같 음)
④ 제14조 제 4호 및 제8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 위를 한 자	④ 제14조 제 12호 및 제 13호----- ----- ----- -----				

현 행	김성원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정연욱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 는 3억원 이 하의 벌금 에 처한다.	----- ----- -----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범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기술 유출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부 침해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³⁾

43) 국가핵심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했는지 입증되지 업무상 배임만 인정한 판례가 있음(2016고단6150, 2018.1.12.선고)

이에, 개정안은 처벌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완화하여 처벌가능한 산업기술 해외유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민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한편, 각 개정안들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벌칙 규정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행	<u>3년</u> 이상 유기징역과 <u>15억원</u> 이하 벌금 병과	<u>1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5억원</u> 이하의 벌금
김성원의원안	3년 and 65억원	15년 or 30억원
고동진의원안	7년 and 65억원	5년 이상 유기징역 or 20억
정연욱의원안	5년 and 20억원	15년 or 20억원
권향엽의원안	3년 and 65억원	15년 or 30억원
한민수의원안	5년 and 20억원	20년 or 20억원

이를 국내외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현행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국내의 「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입법례와 징역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나 벌금형의 상한은 외국보다 2~4배 낮은 수준임.

국내외 유사 입법례 형량 비교

관련 법률	해외유출대상	법정형
첨단전략산업법	첨단전략기술	5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경제스파이법(美)	기술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불 이하 벌금 (법인 1,000만불)
부정경쟁방지법(日)	기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10억엔)

통상의 기술유출범죄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징역형의 상향과 관련하여 2024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일부 상향하고 기존에는 없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⁴⁴⁾,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시 각각 기본 2~6년, 3~7년, 가중 시 최고 10년, 12년으로 현행
범상의 15년 또는 개정안의 20년 이하 징역형보다는 낮은 수준임.

문 의 처
02)6788-5461

44) 종전에는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범죄에 대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권고형량인 기본 1년~ 3년
6개월(감경·가중시 10개월~6년)을 적용하였음.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양형기준> ('24.7.1 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8월	6월~1년 6개월	1년~3년 6개월
2	국내침해	8월~2년	1년~4년	2년 6개월~6년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1년~3년 6개월	2년~6년	4년~10년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2년~5년	3년~7년	5년~12년